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87 발의연월일: 2024. 10. 14.

발 의 자:유상범·곽규택·조배숙

주진우 • 구자근 • 장동혁

서명옥 • 박형수 • 송석준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적발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 법률을 정비하여 대응을 강화하였으나, 최근 이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이 적발되고,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Deep Fake) 허위영상물이 초중고생까지 침투하는 등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관련범죄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나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범행이 텔레그램 등의 보안메신저를 통해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범들 사이에 "우리만 비밀을 지키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임. 이 합의는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줄여, 공범과 피해를 눈덩이처럼 점증시키는 악순환의 단초 역할을 하

고 있음.

이에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에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죄은닉 합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 고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 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형벌의 감면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	제20조(형벌의 감면에 관한 특례)
<u>한 특례)</u>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u> </u>
<u><신 설></u>	②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의 죄
	를 범한 자가 수사·재판절차에
	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
	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
	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